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

## 1. 총괄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 (도입·운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건강보호)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 (21.4.6) 5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1.7.1.) 5~50인 미만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의무는 ' 21.4.6.부터 시행

▣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 서면 합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Ⅰ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가. 현행 규정

## 노·무·정·보

- 현재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규정

### 나.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1항, 신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개정 이유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
  - 법 시행 이후 업무의 특성상 2~3개월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대형 장치산업(대보수기간 등), 해외건설업, ICT 산업 및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사업 등을 중심으로,
  -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주 최대 52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
- 아울러, 해외 주요국 또한 주 40시간제 도입 시점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
  - \* ▲ (일본) 1주, 1개월, 1년(노사협정), ▲ (독일) 6개월, 1년(단협)
  - ▲ (프랑스) 4주, 1년(단협, 산별협약에서 허용 시 최대 3년)
- 다만, 단위기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경사 노위 노사정 논의시 6개월로 확대된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 이를 통해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일부를 정비하였음

### 라. 세부내용 설명

#### (1) 단위 기간(제51조의2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제도(2주·3개월 이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야 합

\*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이 적용됨

(2) 도입 요건(제51조의2제1항)

- (도입)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
    -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①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②특정 주 52시간, ③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서면 합의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각 근로일 및 각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51조의2제1항제1호)
  -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대상 업무, 대상 직종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별근로자를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알려줄 필요
  - 한편, 적법한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 또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아울러, 서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② 단위기간(제51조의2제1항제2호)
  - 법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 (예시) 4개월, 5개월, 6개월, 14주, 20주, 26주 등

- 근로시간 사전 확정 및 중도 변경,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이행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단위기간의 시작일을 명확히 할 필요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제51조의2제1항제3호)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해당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각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함
  - 이 경우 단위기간 내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 서면 합의 등으로 정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게시나 열람, 개별 근로자 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2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나. 개정 이유

-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할 경우, 장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가능해져 만성과로 및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
  - 특히, 연장근로가 더해지는 경우 1주 최대 64시간의 장시간근로가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이 훼손될 우려
- 이에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

다. 세부내용 설명

(1) 적용 대상 근로자

■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

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제51조)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2) 근로일 간 부여(제51조의2제2항)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 (이하 '근로일 간' )까지의 사이에 부여

- '근로일 간' 이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를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를 말함

\* 근로일은 해당 노동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서 24시간 기준이며, 역월 상의 1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 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다음날로 이어지더라도 연속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해당 근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 없이 근로가 종료되면 21:0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나, 4시간의 연장근로(21:00~익일 01:30, 휴게 30분 포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가 종료된 익일 01:3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

- 「다음 근로일 개시」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 종료 후 '익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때' 를 의미

\*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은 서면 합의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종료 시각이 아닌 실제 근로가 종료된 시각을 의미하며, 특정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기산하여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함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21:00~23:00)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일 근로 개시 시각은 11시간 연속휴식 이후인 10:00 이후여야 함

■ '연속 11시간 이상' 의 휴식시간을 부여

- '연속' 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된 것이므로,

-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해야 함

- 아울러,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인 11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함

(3)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제51조의2제2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 운영에 있어 예측이 불가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력대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일 간 연속휴식 시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3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개정 이유

- 3개월이 넘는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18.11월 노동연구원 수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 ▲ (도입사업장)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24.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 (미도입 사업장) 300인 이상은 서면 합의 요건 완화(56.7%)를, 300인 미만은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를 요청
- 이에 따라,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사전 확정토록 하되, 근로시간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최소 2주 전에 통보토록 함

다. 세부내용 설명

(1)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

- '2주 전까지' 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
  - \* (예시) '21.4.19(월)~4.23(금) 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늦어도 '21.4.4(일)까지 통보
- 아울러, '근로일별 근로시간' 을 확정해야 하는 범위는 해당 주 전체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며,
  - 이 경우, 특정일에 실제로 근로해야 할 시간의 총량(1일의 근로시간) 외에도 각 근로일의 '시업과 종업 시각' 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2) 근로자에게 통보

-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는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접 통보하거나,
  - 상세한 근무표 배부 또는 자유롭게 열람·접속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이어야 함(해당 장소 또는 사내 전산망에 게시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필요)

④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4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개정 이유

- 기업 운영에 있어 돌발적인 상황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확정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필요
  - 다만, 그 변동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할 경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어 일·생활 균형 및 건강권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다. 세부내용 설명

(1)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불가피한 사유'란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 합의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로서,
  -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함
- 구체적으로,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사업운영의 중단 또는 지장이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로서,
  -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 가능한 업무량 증가, 정기적인 유지·보수 등 일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 중도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협의'는 중도변경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개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거나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경우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

-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후의 주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제도 도입 시 서면 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함
- 이 경우, 주별 근로시간의 변경은 잔여 단위기간 전체의 주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하나,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서면 합의 시정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유지되도록 잔여 단위기간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확정해야 함

(4)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

- '개시 전' 은 해당 근로일 시작 전을 의미하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제51조의2제3항에서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까지 통보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 임박한 주의 특정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만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해당일이 속한 전체 주의 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 \* (예시) '21.5.7(금)에 5.10(월)~5.16(일) 기간 중 특정일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주(5.10~5.16) 전체의 각 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 아울러,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잔여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의 임박한 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통보하여야 함
- \*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 시점부터 2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변경 시점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통보

⑤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5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서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제4항)”라고 하여, 신고 의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나. 개정 이유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1주 최대 52시간(2주 단위는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이에 근로기준법 제51조제4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절감 등의 수단으로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 근로자의 불이익 및 제도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다. 세부내용 설명

(1)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제51조의2제5항)

■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

- '임금 보전' 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노동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
  - \*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 한편, 실질적인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보전하기로 정한 경우 등은 적법한 임금보전 방안 마련으로 보기 어려우며,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신고

- 개정법에서는 '임금보전방안' 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임금보전을 위한 세부 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저하된 수준의 보전 방안일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재신고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시행규칙 제8조의2)

(2) 신고의무의 예외(제51조의2제5항 단서)

- 제도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
  - 다만,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미신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2조 등)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3) 위반 시 처벌(제116조제1항제3호)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필요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조사 등 가능

⑥ 적용의 제한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6항, 신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

나. 개정 이유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불규칙적 배분 및 탄력적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근로에 따른 건강권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 이에 따라, 통상의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더욱 주의를 요하는 연소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
- 이에,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에서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51조 제3항)
  - 단위기간이 확대된 신설된 제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다. 세부내용 설명

(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규칙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 동일한 취지로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제한

(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통상의 성인근로자에 비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특히 모성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3, 신설)

## 노·무·정·보

-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도 적용되는 신설 규정임

### 나. 개정 이유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
  - 단위기간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함
- 다만, 단위기간 도중 입·퇴사 등이 발생하거나 기간제근로자의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단위기간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할 수 없으므로,
  - 이러한 경우에 대한 임금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다. 세부내용 설명

#### (1)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제도에 적용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기준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제51조에 따른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근로제에도 적용

#### (2) 실제 근로한 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 '실제 근로한 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란 단위기간 도중 채용 및 퇴직, 배치전환\*, 휴직 등으로 탄력근로제를 새로이 적용받거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를 의미

\* (예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A제도, B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 (A)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단위기간 도중 배치전환으로 (B)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면 배치전환 전의 제도(A)에서는 중도 퇴직자와 동일한 정산이, 배치전환 후의 제도(B)에서는 중도 채용자와 동일한 정산이 필요

- 이 경우, 기간제·임시직 등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

#### (3)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

- 단위기간 도중 입·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 단위기간 내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

#### (4)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
  - 실근로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당해 기간의 총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법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한 기간의 역일수/7)”의 식으로 계산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임
 
$$\text{실근로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text{실근로기간의 총 실근로시간} - \left( 40\text{시간} \times \frac{\text{실근로기간의 역일수}}{7\text{일}} \right)$$
  - 이 경우, 1일 및 1주의 연장근로로서 이미 가산수당이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산정시 제외
-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시점은 중도 퇴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 등의 시점, 중도 채용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단위기간 종료시점이 될 것임
- 한편, 탄력근로제 도입 후 실근로시간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법정 연장근로수당 이상을 이미 지급해 왔다면 재차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 임금보전방안의 일환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5) 위반 시 처벌(제109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가. 현행 규정 (제52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제52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 6. (생략)

나. 개정 규정 (제52조제1항, 개정)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정산기간
3. ~ 6. (현행과 같음)

다. 개정 이유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
  - 법 시행 이후 업무의 특성상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제한된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또한, 21대 국회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 개정안도 발의(3건)
- 이에,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외에는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유지

라. 세부내용 설명

(1) 정산 기간(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최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 이 외의 업무는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없음

(2)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 제조업에서의 실품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 이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

- 무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
-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시험·분석 등의 지원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소재·부품·장비 등을 단순 조달하거나 사무·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또는 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업무) 외의 업무일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에 따라 판단

(2) 도입 요건(제52조제1항)

- (도입) 취업규칙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산기간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제도의 취지\*\* 및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함
    -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함
    -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여야 하며, 시업 시각이나 종업시각 중 어느 하나만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
  -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현행 1개월 이내 제도와 동일)
    -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정산기간
    -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52조제1항제1호)

-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대상 업무, 직군, 부서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별근로자를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매 1개월 마다의 가산수당 정산 등이 적용되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알려줄 필요
- 한편, 적법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근로자 또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아울러, 서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② 정산기간(제52조제1항제2호)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 (예시) 4주, 10주, 13주, 1개월, 2개월, 3개월 등
-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매 1개월 마다의 가산수당 정산 등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이 되는 정산기간의 시작일을 명확히 할 필요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제52조제1항제3호)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각 근로일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로 계산
    - \* (예시) 1월을 정산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월이 30일이라면 총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 × (30일 ÷ 7일))이 되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됨

④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⑤ 선택적 근로시간대(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 반드시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
-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근로자 스스로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두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로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절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⑥ 표준근로시간(시행령 제29조제1항)

- '표준근로시간'이란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㉒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가. 개정 규정 (제52조제2항제1호,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나. 개정 이유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할 경우, 장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가능해져 만성피로 및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별도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
  - 특히, 1주 최대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훼손할 우려
- 이에, 노동자의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

다. 세부내용 설명

(1) 적용 대상 근로자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에서 정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며,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함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1개월 이내 선택근로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2) 근로일 간 부여(제52조제2항제1호)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p.24)와 동일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 (이하 '근로일 간' )  
까지의 사이에 부여

○ '근로일 간' 이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근로를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를 말함

\* 근로일은 해당 노동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서 24시간 기준이며, 역월 상의 1일과 일치하지 않  
을 수 있음

-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 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근로일의  
근로가 다음날로 이어지더라도 연속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해당 근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없  
이 근로가 종료되면 21:0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나, 4시간의 연장근로(21:00~익일 01:30,  
휴게 30분 포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가 종료된 익일 01:30부터 11  
시간 연속휴식을 부여

- 「다음 근로일 개시」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 종료 후 '익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해 근무를 시작한 때' 를 의미

\*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은 서면 합의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종료 시각이 아닌 실  
제 근로가 종료된 시각을 의미하며, 특정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기산하여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함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하고 2시간의 연  
장근로(21:00~23:00)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일 근로 개시 시각은 11시간  
연속휴식 이후인 10:00 이후여야 함

■ '연속 11시간 이상' 의 휴식시간을 부여

○ '연속' 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시  
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된 것이므로,

-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해야 함

○ 아울러,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  
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함

(3)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제52조제2항제1호 단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p.25)와 동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 '불가피한 경우' 란 사업 운영에 있어 예측이 불가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력대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연속휴식 시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

③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가. 개정 규정 (제52조제2항제2호,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개정 이유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1일·1주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고,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되어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절감 등의 수단으로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 근로자의 불이익 및 제도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가산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임

다. 세부내용 설명

(1)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구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라 함은 정산기간의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월상 1개월이 되는 매 시점까지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의미하며,
  - 정산기간이 월 단위가 아니어서 마지막에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
    - \* (예시) '21.5.1.을 기산일로 하는 12주간의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은 ▲'21.5.1~5.31, ▲6.1~6.30, ▲7.1~7.23의 각 기간이 됨

(2) 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출
  - \*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마지막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을 기준

$$1\text{주 평균 } 40\text{시간이 되는 매 } 1\text{개월의 근로시간수} = 40\text{시간} \times \frac{\text{매 } 1\text{개월의 역일수}}{7\text{일}}$$

- \* 매 1개월의 역일수가 ▲31일인 경우 177.1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29일인 경우 165.7시간, ▲28일인 경우 160시간

(3) 법 제50조제1항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정산기간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 제50조제1항(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 (예시) 1개월(역일 30일)의 실근로시간이 190시간인 경우에는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1개월의 근로시간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을 초과한 18.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한편,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근로 가능한 시간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 상한의 제한이 없음\*\*
  -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때 1개월마다의 근로시간 상한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3으로 나눈 시간이 아닌,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4) 법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제52조제2항제2호 후단)

-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
  - 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 한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5) 위반 시 처벌(제109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④ 적용의 제한

-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제52조제1항제1호)
- 현행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제도와 동일하게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제외
  -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제한
- 한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70조, 71조 및 제74조제5항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의 제한 규정은 적용

###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①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가. 현행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

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지침으로 정하여 인가요건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

나. 개정 규정 (법 제53조제7항, 신설)

○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개정 이유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등에 근거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지도\*해 왔음

\*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건강보호 조치를 기재해야 함

-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건강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라. 세부내용 설명

(1)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제 53조제7항)

○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5. 시행시기 등

(1) 시행 시기(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3조제7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2제1항,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7조, 제109조 및 제116조의 개

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 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1.1.5.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21.4.6. 시행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준비 행위 등(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부칙 제2조)
-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부칙 제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를 조사·파악할 수 있다.(부칙 제4조)

